

2022 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세종공업(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 조의 2 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2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2 년 1 월 1 일 ~ 2022 년 12 월 31 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 | |
|------------------------|----|
| I. 개요 | 1 |
| 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 2 |
| 1. 기업지배구조 정책 | 2 |
| 2. 주주 | 3 |
| (1) 주주의 권리 | 3 |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1 |
| 3. 이사회 | 30 |
| (1) 이사회 기능 | 30 |
| (2) 이사회 구성 | 36 |
| (3) 사외이사의 책임 | 44 |
|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47 |
| (5) 이사회 운영 | 49 |
| (6) 이사회 내 위원회 | 59 |
| 4. 감사기구 | 61 |
| (1) 내부감사기구 | 61 |
| (2) 외부감사인 | 70 |
| 5. 기타 주요 사항(필요시) | 74 |

I. 개요

▶ 기업명 : 세종공업(주)

▶ 작성 담당자

| | | | | | | | | |
|-----|----|-----|------|--------------|----|-----|-----|--------------------|
| (정) | 성명 | 이경용 | 직급 | 과장 | 부서 | 재무팀 | 이메일 | plzgggl@sjku.co.kr |
| | | | 전화번호 | 031-219-9980 | | | | |
| (부) | 성명 | 전세진 | 직급 | 사원 | 부서 | 재무팀 | 이메일 | sjj926@sjku.co.kr |
| | | | 전화번호 | 031-219-9979 | | | | |

* (공시 담당자와 다를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기업개요

| | | | |
|---------------------------------|------------------|-------------------------------|-------------------------|
| 최대주주등 | (주)에스제이원 외 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7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5.61% |
| 업종(금융/비금융) | 비금융 | 주요 제품 | MUFFLER, C/CONVERTER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 미해당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여부 (해당/미해당) | 미해당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단위 : 억원) | | | |
| 연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연결 매출액 | 18,588.57 | 15,482.49 | 11,827.74 |
| 연결 영업이익 | 320.74 | -27.33 | -61.66 |
| 연결 계속사업이익 | 87.01 | -60.44 | -201.06 |
| 연결 당기순이익 | 1.96 | -107.72 | -218.51 |
| 연결 자산총액 | 11,494.27 | 11,801.00 | 11,587.51 |
| 별도 자산총액 | 6,514.05 | 6,471.53 | 6,582.02 |

*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가장 최근 시점 관련 사항을 도표 좌측부터 기재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1)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 확보, 견제와 균형 추구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당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준과 경과를 공시를 통하여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당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련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 기업 고유의 지배구조 특징(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혹은 주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에 기반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사회의 적법성 및 감사의 역할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의 비율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기관 | 구성 (사외이사 수/ 구성원 수) | 의장/위원장 (사내이사, 사외이사 여부) | 주요역할 |
|------|--------------------------|------------------------------|---|
| 이사회 | 3/7 | 최정연 (사내이사) |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 항 의결과 경영진 감독 |

2.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

(표 1-①-1)

당사는 최근 3년 간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 왔습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정일 당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①-1)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

| 구 분 | 2022년 정기주주총회 | 2021년 정기주주총회 | 2020년 정기주주총회 |
|--|-------------------------------------|-------------------------------------|-------------------------------------|
| 소집결의일 | 2023년 3월 10일 | 2022년 3월 10일 | 2021년 3월 11일 |
| 소집공고일 | 2023년 3월 13일 | 2022년 3월 11일 | 2021년 3월 12일 |
| 주주총회개최일 | 2023년 3월 28일 | 2022년 3월 28일 | 2021년 3월 29일 |
| 공고일과 주주총회 일 사이 기간 | 15일 | 17일 | 17일 |
| 개최장소/지역 | 세종공업(주) 본관 4층 세미나실 / 울산광역시 | 세종공업(주) 본관 4층 세미나실 / 울산광역시 | 세종공업(주) 본관 4층 세미나실 / 울산광역시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 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 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 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 통지 여부 및 방법 | - | - | - |
| 세 이사회 구성 | 7명 중 7명 출석 | 6명 중 6명 출석 | 6명 중 6명 출석 |

| | | | | |
|-------------|-----------------------|--|--|--|
| 부 사 항 | 원 출석여부 | | | |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3명 (개인주주 3명)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4명 (개인주주 4명)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3명 (개인주주 3명)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가장 최근 시점 관련 사항을 도표 좌측부터 기재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 주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현재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약 2주 전 소집결의,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의 조정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등(표1-②-1)

주주의 의결권 행사 환경을 개선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주주총회는 모두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집중일 및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

| 구분 | 제47기 주주총회 | 제46기 주주총회 | 제45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3년 3월 24일 | 2022년 3월 25일 | 2021년 3월 26일 |
| | 2023년 3월 30일 | 2022년 3월 30일 | 2021년 3월 30일 |
| | 2023년 3월 31일 | 2022년 3월 31일 | 2021년 3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3년 3월 28일 | 2022년 3월 28일 | 2021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 예 | 예 | 예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예 | 예 | 예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예 | 예 | 예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ii)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2020년 3월 30일에 개최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서면투표제도 및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하여 주주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유를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표1-②-2)

제47기 및 제46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상정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직접 참여,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다만, 제44기 주주총회에서는 제3호 의안인 '감사 선임의 건'이 부결되었는데, 당시 상법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정족수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안을 결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제45기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실시로 제3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②-2) 3년 간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내역

| | | |
|-----------|------------------|-------------------|
| 정기 | 제47기 주주총회 | 2023.03.28 |
|-----------|------------------|-------------------|

| 안건 |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 ①중 의결권 행사 주 식 수 | 찬성 주식수 (비율, %) | |
|----------------|---------------|---|-----------|-----------------------|--------------------|---------------------------|------------------------|
| | | | | | |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47기 (‘22.01.01 ~ ‘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 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43,933 (99.86%) | |
| | | | | | | 17,754 (0.14%) | |
| | | | | | | | |
| 제2 호 의 안 | 제 2-1 호 | 보통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55,025 (99.95%) | |
| | | | | | | 6,662 (0.05%) | |
| | 제 2-2 호 | 보통 | 박정길(사내이사)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55,025 (99.95%) |
| | | | | | | | 6,662 |

| | | | | | | | |
|---------|----|---------------|----|------------|------------|------------|----------|
| | | | | | | | (0.05%) |
| 제 2-3 호 | 보통 | 박세중(사내이사)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55,025 | (99.95%) |
| | | | | | | 6,662 | (0.05%) |
| | | | | | | | |
| 제 2-4 호 | 보통 | 허승현(사외이사)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55,320 | (99.95%) |
| | | | | | | 6,367 | (0.05%) |
| | | | | | | | |
| 제 2-5 호 | 보통 | 김수일(사외이사)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55,320 | (99.95%) |
| | | | | | | 6,367 | (0.05%) |
| | | | | | | | |
| 제3호 의안 | 보통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57,658 | (99.97%) |
| | | | | | | 4,029 | (0.03%) |
| | | | | | | | |
| 제4호 의안 | 보통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7,052,299 | 12,461,687 | 12,457,953 | (99.97%) |
| | | | | | | 3,734 | (0.03%) |
| | | | | | | | |

| | | |
|-----------|------------------|-------------------|
| 정기 | 제46기 주주총회 | 2022.03.28 |
|-----------|------------------|-------------------|

| 안건 |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 수 | 찬성 주식수 |
|--------|-------|--|-------|--------------------|----------------|------------|
| | | | | | | (비율, %)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46기 ('21.01.01 ~ '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7,052,299 | 13,292,865 | 13,248,018 |
| | | | | | | (99.66%) |
| | | | | | | 44,847 |
| | | | | | | (0.34%) |
| 제2 호 의 | 제 2-1 | 보통 | 가결 | 27,052,299 | 13,312,865 | 13,249,396 |
| | | | | | | (99.52%) |

| | | | | | | | |
|--------|---------|---------------|-----------|------------|------------|------------|------------|
| 안 | 호 | | | | | | 63,469 |
| | | | | | | | (0.48%) |
| | 제 2-2 호 | 보통 | 김익석(사내이사) | 가결 | 27,052,299 | 13,312,865 | 13,249,396 |
| | | | | | | | (99.52%) |
| | 제 2-3 호 | 보통 | 이경철(사외이사) | 가결 | 27,052,299 | 13,312,865 | 63,469 |
| | | | | | | | (0.48%) |
| 제3호 의안 | 보통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7,052,299 | 13,292,865 | 13,252,279 | |
| | | | | | | (99.69%) | |
| 제4호 의안 | 보통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7,052,299 | 13,292,865 | 40,586 | |
| | | | | | | (0.31%) | |

| | | |
|-----------|------------------|-------------------|
| 정기 | 제45기 주주총회 | 2021.03.29 |
|-----------|------------------|-------------------|

| 안건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 ①종 의결권 행사 주식 수 | 찬성 주식수 |
|--------|---------|--|-----------|--------------------|----------------|------------|
| | | | | | | (비율, %)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45기 ('20.01.01 ~ '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6,920,714 | 12,992,621 | 12,981,239 |
| | | | | | | (99.91%) |
| 제2호 의안 | 제 2-1 호 | 보통 | 박세종(사내이사) | 가결 | 26,920,714 | 1,570 |
| | | | | | | (0.09%) |
| 제2호 의안 | 제 2-1 호 | 보통 | 박정길(사내이사) | 가 | 26,920,714 | 12,491,358 |
| | | | | | | (96.14%) |
| 제2호 의안 | 제 2-1 호 | 보통 | 박정길(사내이사) | 가 | 26,920,714 | 501,263 |
| | | | | | | (3.86%) |
| 제2호 의안 | 제 2-1 호 | 보통 | 박정길(사내이사) | 가 | 26,920,714 | 12,491,358 |
| | | | | | | (96.14%) |

| | | | | | | | |
|--------|---------------|---------------|-----------|------------|------------|---|--|
| | 2-2 호 | | | 결 | | | (96.14%) 501,263 (3.86%) |
| | 제 2-3 호 | 보통 | 허승현(사외이사) | 가 결 | 26,920,714 | 12,992,621 | 12,491,358 (96.14%) 501,263 (3.86%) |
| 제3호 의안 | 보통 | 배정한(감사) | 가 결 | 15,546,725 | 1,618,631 | 1,617,203 (99.91%) 1,428 (0.09%) | |
| 제4호 의안 | 보통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 결 | 26,920,714 | 12,992,621 | 12,494,268 (96.16%) 498,353 (3.84%) | |
| 제5호 의안 | 보통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 결 | 26,920,714 | 12,992,621 | 12,991,193 (99.98%) 1,428 (0.02%) | |
| 제6호 의안 | 특별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 가 결 | 26,920,714 | 12,992,621 | 12,991,312 (99.98%) 1,309 (0.02%) | |
| 제7호 의안 | 특별 | 연구소 물적분할의 건 | 가 결 | 26,920,714 | 12,992,621 | 12,991,312 (99.99%) 1,309.00 (0.01%) |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안건, 의안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 더욱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

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따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ii)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내역 및 이행상황 (안건 관련 주주총회 찬반비율 명기) (표1-③-1)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내역이 없습니다.

(표1-③-1)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내역 및 이행 상황(안건 관련 주주총회 찬반비율 명기)

| 제안일자 | 제안주제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여부 | 찬성률(%) | 반대 ·기권율(%) |
|------|------|-------|------------|------|--------|---------------|
| - | - | - | - | - | - | - |

(iv)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표 1-③-2)

당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표 1-③-2)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과거 수년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적이 없었기에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항 발생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주주들이 해당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해당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을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정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에 의거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4조에는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처리하도록, 제45조에는 해당 배당금을 금전 및 주식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5조의2에서는 중간배당에 대해서, 제46조에서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매 결산기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및 회사의 실적, 현금흐름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주총 4주 전에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배당 내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결산기 말 사업보고서에도 배당현황 및 배당과 관련된 정관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과거 3년간 배당결정공시

| 배당결정공시일 | 주주총회일 | 기간 차이 | 비고 |
|------------|------------|-------|-----------|
| 2023.03.10 | 2023.03.28 | 18일 | 주주총회 3주 전 |
| 2022.02.25 | 2022.03.28 | 31일 | 주주총회 4주 전 |
| 2021.03.03 | 2021.03.29 | 26일 | 주주총회 4주 전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배당과 관련하여 회사의 실적, 현금흐름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배당 진행 시에는 상법 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이 결정된 때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아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주주에게 충분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이를 보완하여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정책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표 1-⑤-1)

당사는 배당 실시를 결정한 이사회 당일에 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관련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고서와 배당금 지급 통지 등을 통해서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적절

한 수준의 배당이 지급되어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간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 1-⑤-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내역

(단위 : 주, 천원, %)

| 사업 연도 | 결산월 | 주식종류 | 주식 배당 | 현금배당 | | | | |
|-------|-----|------|-------|-------------|-----------|-------------|-----------|---------|
| | | | | 주당 배당금 ① | 총 배당금 | 시가 배당률 ② | 배당성향③ | |
| | | | | | | | 연결 기준 | 개별기준 |
| 2022년 | 12 | 보통주 | - | 100원/주 | 2,705,230 | 1.8% | 1,380.30% | 41.57% |
| 2021년 | 12 | 보통주 | - | 100원/주 | 2,705,230 | 1.1% | -25.11% | 33.23% |
| 2020년 | 12 | 보통주 | - | 50원/주 | 1,346,036 | 0.6% | -6.16% | -10.55% |

① 1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②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③ 배당금 총액 / 연결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i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

(차등배당내역, 이사회 결정일, 주당배당금, 총배당금 등)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과 관련된 정보를 주주총회 3주 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장기 배당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당사의 경영실적 수준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한 주주환원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배당계획을 포함하거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방식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결과를 기준일을 명시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i) 발행가능 주식 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표 2-①-1)

당사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이 중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27,820,961주 입니다. 당사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2-①-1) 주식발행 현황

| 구분 | 발행가능주식수(주)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비고 |
|------------|------------|------------|--------|--------|
| 보통주 | 80,000,000 | 27,820,961 | 34.78% | 의결권 있음 |
| 종류주 우선주 | - | - | - | - |

* 발행가능 주식수 :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 발행주식수 :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 발행비율 : (발행주식수 / 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ii)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등

당사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고유 권한이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 (일정, 대상, 주요 내용 등) (표2-①-2)

당사는 매년 결산월(1월, 4월, 7월, 10월)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 반기, 연간 실적발표 및 경영현황이나 전략 등의 발표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관 방문 IR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 수시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미팅 및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IR과 관련된 자료는 KIND(<http://kind.krx.co.kr>)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sjku.co.kr/irevent.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2-①-2)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주주와의 대화 : 주요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2.01.04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1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 - |
| 2022.02.18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1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 - |
| 2022.03.18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1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제 4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등 | - |
| 2022.04.22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2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 | - |
| 2022.07.13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2년 반기 경영실적 설명 | |
| 2022.07.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2년 반기 경영실적 설명 | |
| 2022.09.16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2년 반기 경영실적 설명 '22년 경영실적 전망 및 전략 등 | |
| 2022.10.1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2년 경영목표 전망 | |
| 2022.11.29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2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 '22년 경영실적 전망 및 전략 등 | - |
| 2022.12.0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2년 경영실적 마감 전망 | - |
| 2023.01.06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2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 - |
| 2023.02.21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2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 - |
| 2023.03.20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2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23년 경영목표 및 전략 설명 등 | - |
| 2023.04.2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3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 | - |

(ii)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모두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 여부 및 영문공시 내역 (표 2-①-3)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자의 연락처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문공시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2-①-3)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
| - | - | - |

(iv) 공정공시 내역(표 2-①-4)

당사는 현재까지 공정공시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표 2-①-4)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

| 공시일자 | 공시제목 | 주요 내용 |
|------|------|-------|
| - | - | - |

(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지정 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표 2-①-5)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 2-①-5)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등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 | - | - |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매분기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IR과 관련된 자료는 KIND(<http://kind.krx.co.kr>)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sjku.co.kr/irevent.html>)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IR담당자의 연락처는 공시자료 및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하여 상시 주주로부터의 연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각 주제별로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외국인 주주도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영문공시나 공정공시를 별도로 진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공정공시법인에 지정된 적이 없으며, 해당 공시 업무와 관련해서도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내부거래 승인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이사회 심의대상으로 정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

| 조항 | 내용 |
|--------|---|
| 8.1.16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 |

(ii)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말함

당사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거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포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각 의안별로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7-①-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iii)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다(정기보고서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준하여 기재)

지난 2022년 연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 |
|------|---------------------------|
| 대주주명 | 주식회사 에스제이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
| 거래일자 | 2022년 1월 ~ 12월 |
| 거래내용 | 컨설팅 용역 수수료 |
| 거래금액 | 448,000,000원 |

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가. 해외 채무보증

(단위 : 천불, 천유로화, 천위엔)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 | | 비고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중국북경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 USD12,000 | - | USD12,000 | - | 우리은행 중국북경지점 |
| | | RMB60,000 | - | - | RMB60,000 | 신한은행 중국북경지점 |
| 세종알라바마 | 계열 회사 | USD40,000 | - | - | USD40,000 | 독일 바스프(BASF) 원자재(촉매)구매 보증 |
| | | USD7,200 | - | - | USD7,200 | 우리은행 LA 지점 |
| | | USD3,840 | - | - | USD3,840 | 국민은행 뉴욕지점 |
| | | USD1,050 | - | - | USD1,050 | 신한 아메리카 |
| 세종조지아 | | USD3,600 | - | - | USD3,600 | 우리은행 LA 지점 |
| | | - | USD2,000 | - | USD2,000 | |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 | | 비고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세종루스 | | EUR3,000 | - | - | EUR3,000 | 한국수출입은행 |
| | | EUR2,700 | - | EUR325 | EUR2,375 | |
| | | EUR2,700 | - | EUR325 | EUR2,375 | 우리은행 SPB 지점 |
| | | EUR3,600 | - | - | EUR3,600 | 하나은행 모스크바지점 |
| 세종멕시코 | | USD15,600 | - | USD600 | USD15,000 | 우리은행 LA 지점 |
| | | USD20,000 | - | - | USD20,000 | 독일 바스프(BASF) 원자재(촉매)구매 보증 |
| 세종테크비카스 | | USD715 | - | - | USD715 | 우리은행 인도 GURGAON 지점 |
| 해외합계 | | USD104,005 | USD2,000 | USD12,600 | USD93,405 | - |
| | | EUR11,900 | - | EUR550 | EUR11,350 | - |
| | | RMB60,000 | - | - | RMB60,000 | - |

나. 국내 채무보증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 | | 비고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세움 | 계열 회사 | 2,671 | - | 663 | 2,008 | 국민은행 |
| | | 7,200 | - | 3,830 | 3,370 | 한국산업은행 외 |
| (주)세종이브이 | | 14,194 | - | 1,000 | 13,194 | 한국산업은행 외 |
| 국내합계 | | 24,065 | - | 4,493 | 19,572 | - |

3.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등

(단위 : 천불, 천유로화, 천루불, 백만루피,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계 | 출자 및 출자지분 등 처분내역 | 비고 |
|-------------|----|------------------|----|
| | | 거래내역 | |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 중국염성세종기차배건 유한공사 | 계열 회사 | 11,803 (\$10,150) | - | - | 11,803 (\$10,150) | 무상증자 \$3,000 포함 |
| 중국북경세종기차배건 유한공사 | 계열 회사 | 8,074 (\$7,000) | - | - | 8,074 (\$7,000) | - |
| 미국세종아메리카 | 계열 회사 | 28,043 (\$30,000) | - | - | 28,043 (\$30,000) | - |
| 세종체코 | 계열 회사 | 12,647 (\$6,000) (€3,500) | - | - | 12,647 (\$6,000) (€3,500) | - |
| 세종슬로바키아 | 계열 회사 | 7,177 (\$2,000) (€3,570) | - | - | 7,177 (\$2,000) (€3,570) | - |
| 세종루스 | 계열 회사 | 16,984 (RUB10) (€10,677) | - | - | 16,984 (RUB10) (€10,677) | - |
| 세종멕시코 | 계열 회사 | 11,268 (\$9,990) | - | - | 11,268 (\$9,990) | - |
| 세종테스크비카스 | 계열 회사 | 1,090 (\$533) | - | (8) (\$6) | 1,082 (\$906) | - |
| 세종써밋인도네시아 | 계열 회사 | 3,911 (Rp49,200) | - | - | 3,911 (Rp49,200) | - |
| 세종(중국)기차배건기 술연발유한공사 | 계열 회사 | 22,097 (\$19,450) | - | - | 22,097 (\$19,450) | - |
| 중경진천세종기차배건 유한공사 | 계열 회사 | - | - | - | - | - |
| 해외 합계 | | 123,094 | - | 8 | 123,086 | - |
| | | (\$85,502) | - | (\$6) | (\$85,496) | |

| 성명 (법인명) | 관계 | 출자 및 출자지분 등 처분내역 | | | | 비고 |
|-------------|----------|------------------|--------|--------|------------|----|
| | | 거래내역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RUB10) | - | - | (RUB10) | |
| | | (Rp49,200) | - | - | (Rp49,200) | |
| | | (€17,747) | - | - | (€17,747) | |
| (주)세움 | 계열 회사 | 11,500 | - | - | 11,500 | - |
| 아센텍(주) | 계열 회사 | 15,058 | 5,585 | - | 20,643 | - |
| (주)세종 ATT | 계열 회사 | 5,585 | - | 5,585 | - | - |
| 삼풍공업(주) | 계열 회사 | 6,000 | - | - | 6,000 | - |
| 모비어스앤밸류체인 | 계열 회사 | 5,500 | - | - | 5,500 | - |
| 이큐브솔루션(주) | 계열 회사 | 640 | 520 | - | 1,160 | - |
| 에스알랩 | 계열 회사 | - | 500 | - | 500 | - |
| (주)세종이브이 | 계열 회사 | 20,000 | 5,000 | 11,535 | 13,465 | - |
| 세종중앙연구소(주) | 계열 회사 | 8,796 | - | - | 8,796 | - |
| 국내 합계 | | 73,079 | 11,065 | 11,601 | 61,913 | - |
| 합계 | | 196,173 | 11,605 | 11,593 | 184,999 | - |
| | | (\$85,502) | - | (\$6) | (\$85,496) | - |
| | | (RUB10) | - | - | (RUB10) | - |

| 성명 (법인명) | 관계 | 출자 및 출자지분 등 처분내역 | | | | 비고 |
|-------------|----|------------------|----|----|------------|----|
| | | 거래내역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Rp49,200) | - | - | (Rp49,200) | - |
| | | (€17,747) | - | - | (€17,747) | - |

4.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2022년 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 구분 |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지분율 | 종속기업 소유지분 |
|--------------------------|--------------------------|-------------|------------------|------|---|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에스제이원 | 무역 및 컨설팅 | 대한민국 | - | |
| 종속기업 | 염성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자동차부품 제조 | 중국 | 100% | |
| | 북경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 | 100% | |
| | Sejong America, Inc | | 미국 | 100% | |
| | Sejong Alabama, LLC | | | - | Sejong America, Inc 100% |
| | Sejong Georgia, LLC | | | - | Sejong America, Inc 100% |
| | Sejong Slovakia S.R.O | | 슬로바키아 | 100% | |
| | Sejong Czech S.R.O | | 체코 | 100% | |
| | Sejong Rus, LLC | | 러시아 | 100% | |
| | (주)세움 | | 대한민국 | 100% | |
| | 세종기차배건기 술연발유한공사 | | 자동차부품 개발 및 연구 | 중국 | 100% |
| | 사천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자동차부품 제조 | - | | (주)세움 40% 염성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30% 북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30% |

| | | | | | |
|------|--------------------------------|---------------------------------|----------------------|-------|--|
| | 태창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 | - | 북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36.35% 세종기차배건기술연발유 한공사 29.78% |
| | 상해SJG기차연발 유한공사 | 자동차부품 개발 및 연 구 | | - | 세종기차배건기술연발유 한공사 100% |
| | 아센텍(주) | 자동차부품 제조 | 대한민국 | 100% | |
| | ASENTEC VIETNAM CO., LTD | | 베트남 | - | 아센텍(주) 100% |
| | Sejong Mexico, LLC | | 멕시코 | 99.9% | Sejong America, Inc 0.1% |
| | 중경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 중국 | - | 북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100% |
| | 귀양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 | - | 태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100% |
| | 정주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 | - | 태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100% |
| | 닝더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 | - | 태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100% |
| | 염성서주기차배 건유한공사 | | | - | 태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100% |
| | 주식회사 세종이 브이 | | 대한민국 | 100% | |
| | 세종중앙연구소 주식회사 | | 자동차부품 개발 및 연 구 | 대한민국 | 100% |
| | 세종테크비카 스 | 자동차부품 제조 | 인도 | 50% | |
| | 세종써밋인도네 시아 | | 인도네시아 | 60% | |
| | 중경진천세종기 차배건유한공사 | | 중국 | - | 북경세종기차배건유한공 사 100% |
| | 안휘진천세종기 차배건유한공사 | | | - | 중경진천세종기차배건유 한공사 100% |
| 관계기업 | 삼풍공업(주) | | 대한민국 | 33.3% | |
| | 모비어스 앤 벨류 체인 | | | 41.9% | |
| | 이큐브솔루션 | 산업용 후 처리부품 제조, 판매 및 연구 | | 40% | |

| | | | | | |
|----|--------------------------------|----------------------|------|-------|------------|
| | 강소아센텍센서 유한공사 | 자동차부품 제조 | 중국 | - | 아센텍(주) 49% |
| | (주)에스알렘 | 스피커 디 자인 및 제 조 | 대한민국 | 29.4% | |
| 기타 | (주)세정 | 자동차부품 제조 | 대한민국 | 19.9% | |
| | 세정베트남유한 공사 | | | 베트남 | - |
| | 염성삼정기차배 건유한공사 | | 중국 | - | |
| | (주)이에쓰엠 | | | - | |
| | 피엘에쓰(주) | 화물포장 및 검수 | 대한민국 | - | |
| | (주)쿤스트할레 | 전시장임대 | | - | |
| | SHANGHAI J&J TRADE CO., LTD | 무역 | 중국 | - | |
| | 제이엔제이글로 벌 | 상품중개 | 대한민국 | - | |

(2) 2022년 중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단위 : 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거래 | | | 비용거래 | | |
|------------------------------------|------------------------|------------|----------|------------|----------|----------|---------|
| | | 매출 거래 | 기타 거래 | 합계 | 매입 거래 | 기타 거래 | 합계 |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기업 | 에스제이원(주) | - | - | - | - | 448,000 | 448,000 |
| 종속기업 | 염성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1,819,071 | 266,173 | 2,085,244 | - | 51,071 | 51,071 |
| | 북경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2,464,097 | 109,723 | 2,573,820 | - | 8,418 | 8,418 |
| | Sejong Alabama, LLC | 66,302,980 | 790,838 | 67,093,818 | - | 18,402 | 18,402 |
| | Sejong | 29,671,885 | 195,971 | 29,867,857 | - | 58,118 | 58,118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거래 | | | 비용거래 | | |
|------|--------------------------|------------|----------|------------|-----------|-----------|-----------|
| | | 매출 거래 | 기타 거래 | 합계 | 매입 거래 | 기타 거래 | 합계 |
| | Georgia, LLC | | | | | | |
| | Sejong Slovakia S.R.O | 15,582,907 | 86,159 | 15,669,066 | - | 195,846 | 195,846 |
| | Sejong Czech S.R.O | 26,373,207 | 91,009 | 26,464,216 | - | 113,606 | 113,606 |
| | Sejong Rus, LLC | 1,570,872 | 286,355 | 1,857,227 | - | 57,098 | 57,098 |
| | (주)세움 | 115,476 | 3,840 | 119,316 | 6,383,668 | 805,975 | 7,189,644 |
| | (주)세종에이티 티 | - | 28,243 | 28,243 | - | - | - |
| | 아센텍(주) | 293,956 | 38,964 | 332,920 | 7,577,377 | 423,936 | 8,001,313 |
| | Sejong Mexico, LLC | 22,271,996 | 78,908 | 22,350,904 | - | 8,321 | 8,321 |
| | 주식회사 세종 이브이 | 117,670 | - | 117,670 | 8,439,570 | - | 8,439,570 |
| | 세종중앙연구 소 주식회사 | 7,622,801 | 86,253 | 7,709,054 | - | 3,991,672 | 3,991,672 |
| | 세종테크비 카스 | - | 65,629 | 65,629 | - | - | - |
| | 세종써밋인도 네시아 | 971,373 | - | 971,373 | - | 5,958 | 5,958 |
| 관계기업 | 모비어스 앤 벨 류체인 | - | 78,578 | 78,578 | - | 509,968 | 509,968 |
| | 이큐브솔루션 | 7,007,014 | 823,750 | 7,830,764 | - | 572 | 572 |
| 기타 | (주)세정 | 4,812,848 | 755,937 | 5,568,786 | 6,865,269 | 86,632 | 6,951,901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거래 | | | 비용거래 | | |
|----|----------|-------------|-----------|-------------|------------|-----------|------------|
| | | 매출 거래 | 기타 거래 | 합계 | 매입 거래 | 기타 거래 | 합계 |
| | 피엘에쓰(주) | 312,000 | 9,346 | 321,346 | - | - | - |
| | (주)쿤스트할레 | - | - | - | - | 41,806 | 41,806 |
| 합계 | | 187,310,153 | 3,795,676 | 191,105,831 | 29,265,884 | 6,825,399 | 36,091,284 |

2021 년 중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거래 | | | 비용거래 | | |
|---|--------------------------|------------|-----------|------------|--------|---------|---------|
| | | 매출거래 | 기타거래 | 합계 | 매입거래 | 기타거래 | 합계 |
| 당해 기 업에 유 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제이원 (주) | - | - | - | - | 448,000 | 448,000 |
| 종속기업 | 염성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1,818,272 | 2,521,581 | 4,339,853 | - | 7,654 | 7,654 |
| | 북경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2,579,069 | 1,866,454 | 4,445,523 | - | 9,123 | 9,123 |
| | Sejong Alabama, LLC | 69,464,541 | 895,569 | 70,360,110 | 12,290 | 7,017 | 19,307 |
| | Sejong Georgia, LLC | 31,535,871 | 682,176 | 32,218,047 | - | 21,869 | 21,869 |
| | Sejong Slovakia S.R.O | 24,602,088 | 725,446 | 25,327,534 | - | 145,986 | 145,986 |
| | Sejong Czech S.R.O | 27,979,309 | 747,162 | 28,726,471 | - | 35,942 | 35,942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거래 | | | 비용거래 | | |
|------|--------------------|-------------|------------|-------------|------------|-----------|------------|
| | | 매출거래 | 기타거래 | 합계 | 매입거래 | 기타거래 | 합계 |
| | Sejong Rus, LLC | 6,182,345 | 342,535 | 6,524,880 | - | 41,217 | 41,217 |
| | (주)세움 | 804,385 | 1,159,675 | 1,964,060 | 4,366,023 | 1,044,513 | 5,410,536 |
| | (주)세종에이티티 | - | 193,882 | 193,882 | - | - | - |
| | 중경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82,774 | 267,288 | 350,062 | - | - | - |
| | 아센텍(주) | 681,548 | 57,256 | 738,804 | 5,141,791 | 40,779 | 5,182,570 |
| | Sejong Mexico, LLC | 19,135,059 | 510,801 | 19,645,860 | - | 4,279 | 4,279 |
| | 주식회사 세종 이브이 | 109,372 | 226,876 | 336,248 | 5,983,091 | 2,288,389 | 8,271,480 |
| | 세종중앙연구 소 주식회사 | 2,829,169 | 48,346 | 2,877,515 | - | 1,841,766 | 1,841,766 |
| | 세종테크비 카스 | - | 16,519 | 16,519 | - | - | - |
| | 세종써밋인도 네시아 | 2,531,606 | 256,516 | 2,788,122 | - | 980 | 980 |
| 관계기업 | 모비아스 앤 밸류체인 | - | 254,469 | 254,469 | - | 944,153 | 944,153 |
| | 이큐브솔루션 | 993,620 | - | 993,620 | - | - | - |
| 기타 | (주)세정 | 4,969,626 | 1,770,006 | 6,739,632 | 5,413,786 | 124,557 | 5,538,343 |
| | 피엘에쓰(주) | - | 322,670 | 322,670 | - | - | - |
| | (주)쿤스트할 레 | - | - | - | - | 41,937 | 41,937 |
| 합계 | | 196,298,654 | 12,865,227 | 209,163,881 | 20,916,981 | 7,048,161 | 27,965,142 |

(3) 2022 년 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요한 채권·채무의 내용

(단위 : 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 채무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등 | 합계 |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제이원(주) | - | - | - | - | 123,200 | 123,200 |
| 종속기업 | 염성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883,650 | 239,034 | 1,122,684 | 2,425,774 | - | 2,425,774 |
| | 북경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894,193 | 317,795 | 1,211,988 | 80,761 | 10,877 | 91,638 |
| | Sejong Alabama, LLC | 41,683,405 | 767,348 | 42,450,753 | - | - | - |
| | Sejong Georgia, LLC | 23,145,604 | 206,548 | 23,352,152 | - | - | - |
| | Sejong Slovakia S.R.O | 46,969,297 | 39,960 | 47,009,257 | - | 192,481 | 192,481 |
| | Sejong Czech S.R.O | 23,365,144 | 83,547 | 23,448,691 | 40,845 | 20,091 | 60,936 |
| | Sejong Rus, LLC | 14,316,358 | 359,528 | 14,675,886 | 54,561 | 2,394 | 56,955 |
| | (주)세움 | - | - | - | 657,572 | 534,128 | 1,191,700 |
| | 태창세종기차 배건유한공사 | - | 69,154 | 69,154 | - | -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 채무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등 | 합계 |
| | 아센텍(주) | 323,352 | 1,126,245 | 1,449,597 | 413,254 | 24,024 | 437,278 |
| | Sejong Mexico, LLC | 37,158,417 | 245,357 | 37,403,774 | - | 338 | 338 |
| | 주식회사 세종 이브이 | 129,437 | - | 129,437 | 2,284,034 | - | 2,284,034 |
| | 세종중앙연구소 주식회사 | 5,688,521 | 40,195 | 5,728,716 | - | 1,795,202 | 1,795,202 |
| | 세종써밋인도네시아 | 3,440,778 | - | 3,440,778 | 1,109 | - | 1,109 |
| 관계기업 | 모비어스 앤 벨 류체인 | - | 5,736,170 | 5,736,170 | - | 19,656 | 19,656 |
| | 이큐브솔루션 | 2,609,066 | 876,150 | 3,485,216 | - | - | - |
| 기타 | (주)세정 | 1,409,275 | - | 1,409,275 | 206,405 | 20,739 | 227,144 |
| | 피엘에쓰(주) | - | 739 | 739 | - | - | - |
| | (주)쿤스트할레 | - | - | - | - | 2,950 | 2,950 |
| 합계 | | 202,016,497 | 10,107,770 | 212,124,267 | 6,164,315 | 2,746,080 | 8,910,395 |

2021년 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요한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 채무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등 | 합계 |
| 당해 기업에 유의적 | 에스제이원(주) | - | - | - | - | 123,200 | 123,200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 채무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등 | 합계 |
|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 | |
| 종속기업 | 염성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509,222 | 57,620 | 566,842 | 3,250,289 | - | 3,250,289 |
| | 북경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464,535 | 697,912 | 1,162,447 | - | - | - |
| | Sejong Alabama, LLC | 32,204,845 | 87,544 | 32,292,389 | - | 2,708 | 2,708 |
| | Sejong Georgia, LLC | 26,992,719 | 531,137 | 27,523,856 | - | - | - |
| | Sejong Slovakia S.R.O | 38,457,566 | 56,736 | 38,514,302 | - | 14,457 | 14,457 |
| | Sejong Czech S.R.O | 19,331,378 | 56,659 | 19,388,037 | - | 8,040 | 8,040 |
| | Sejong Rus, LLC | 14,147,320 | 90,985 | 14,238,305 | 1,805 | - | 1,805 |
| | (주)세움 | - | - | - | 273,559 | 16,080 | 289,639 |
| | 중경세종기차배 건유한공사 | 2,442 | 22,920 | 25,362 | - | - | - |
| | 아센텍(주) | 749,703 | 3,170,000 | 3,919,703 | 495,108 | 5,606 | 500,714 |
| | Sejong Mexico, LLC | 38,782,457 | 129,712 | 38,912,169 | - | 2,827 | 2,827 |
| | 주식회사 세종 이브이 | 120,309 | - | 120,309 | - | 2,517,228 | 2,517,228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 채무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등 | 합계 |
| | 세종중앙연구소 주식회사 | 3,087,335 | 25,605 | 3,112,940 | - | 1,869,401 | 1,869,401 |
| | 세종써밋인도네 시아 | 240,303 | - | 240,303 | - | - | - |
| 관계기업 | 모비어스 앤 벨 류체인 | - | 245,378 | 245,378 | - | 30,759 | 30,759 |
| | 이큐브솔루션 | 1,092,982 | 108,900 | 1,201,882 | - | - | - |
| 기타 | (주)세정 | 1,649,409 | - | 1,649,409 | 342,377 | 22,023 | 364,400 |
| | 피엘에스(주) | - | 925 | 925 | - | - | - |
| | (주)쿤스트할레 | - | - | - | - | 2,943 | 2,943 |
| 합계 | | 177,832,525 | 5,282,033 | 183,114,558 | 4,363,138 | 4,615,272 | 8,978,410 |

(4) 2022 년 및 2021 년 중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거래내역

(2022 년)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대체 | 감소 | 기말 |
|-----------------|-------|-------------|-----------|-------------|-------------|-------------|
| 중속기업 | | | | | | |
| 세종중앙연구소 주식회사 | 단기대여금 | 1,100,000 | 400,000 | - | (1,050,000) | 450,000 |
| 아센텍(주) | 장기대여금 | 2,490,000 | - | - | (2,490,000) | - |
| 관계기업 | | | | | | |
| 모비어스 앤 벨류 체인 | 단기대여금 | - | 2,500,000 | (2,000,000) | (500,000) | - |
| | 장기대여금 | 5,000,000 | - | 2,321,247 | - | 7,321,247 |
| | 손실충당금 | (5,000,000) | - | (245,378) | 3,660,301 | (1,585,077) |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대체 | 감소 | 기말 |
|--------|------|-----------|-----------|--------|-----------|-----------|
| 계 | | 3,590,000 | 2,900,000 | 75,869 | (379,699) | 6,186,170 |

(2021 년)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종속기업 | | | | | |
| 주식회사 세종이브이 | 단기대여금 | 3,032,900 | 8,200,000 | (11,232,900) | - |
| 세종중앙연구소 주식회사 | 단기대여금 | - | 1,100,000 | - | 1,100,000 |
| (주)세종에이티티 | 장기대여금 | 2,190,000 | 300,000 | - | 2,490,000 |
| | 손실충당금 | (879,307) | (325,505) | 1,204,812 | - |
| 관계기업 | | | | | |
| 모비어스 앤 밸류체인 | 단기대여금 | 2,000,000 | 3,000,000 | (5,000,000) | - |
| | 장기대여금 | - | 5,000,000 | - | 5,000,000 |
| | 손실충당금 | - | (5,000,000) | - | (5,000,000) |
| 계 | | 6,343,593 | 12,274,495 | (15,028,088) | 3,590,000 |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하여 2021년 7월에 물적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분할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당사가 진행한 물적 분할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에 침해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후 합병이나 분할 등이 진행될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

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2021년 3월 11일에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물적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중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규정한 부분은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입니다. 다만, 당사가 진행한 분할은 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및 시행령 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할 공시 및 분할 완료 공시에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의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가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 예상된다면 법령 준수 이외 추가적으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업무집행 및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일정한 업무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감독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있

습니다.

<참고자료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 정관

- 국내외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
-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 발행 시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에 관한 사항
- 신주 배정 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그 방법을 성과연동형으로 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
- 사채의 발행
-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사채 배정방식
- 전환사채 발행 시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 부여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 전환청구기간의 조정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방식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발행 시 그 주식발행가액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주주총회의 소집
- 대표이사 등의 선임
- 이사의 직무 및 대표이사 유고 시 대행순서
- 이사회 의장 선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 주식의 소각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 본 회사 업무 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

■ 이사회 규정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 감사의 보수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
- 법정준비금의 감액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각자 대표이사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결손의 처분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자금의 차입 및 보증에 관한 행위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를 수행하는 대표자 및 감사의 역할을 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대표자의 조치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방식 검토
- 대표자와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승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사항의 승인

6. 기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주요 내용 및 효과

* 심의·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한 내역은 없습니다.

(iii)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조항 | 이사회 규정 |
|----|--------|

| | |
|---------------------------------------|---|
| 10.2.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10.2.1.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 10.2.2.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10.2.3.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 10.2.4.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 한편, 당사에서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조항 | 이사회 규정 |
| 8.3. | 재무에 관한 사항 |
| 8.3.7.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더불어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이사 및 의사회의를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배구조보고서에서는 승계와 관련하여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데에 세부적인 기준 및 해당 후보군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해당 후보군을 심의 및 의결한 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선임하여 해당 승계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리더십 및 전문성 등의 역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앞으로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후보군 선정 및 검증, 교육과정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외부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당사는 리스크와 관련한 정책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재무적 위험 관리는 재무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위험관리를 자본위험관리, 금융위험관리, 환위험관리, 이자율위험관리, 가격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의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담당 인원이 해당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① 준법경영

당사는 '윤리강령 실천지침 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업무 내·외적으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윤리강령은 고객과의 거래, 회사자산의 사용, 직원 상호간 금지조항, 거래처와의 공정한 거래 관련 금지사항 등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 회사 내의 홈페이지 및 메일 등 다양한 제보 경로를 통하여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임직원의 효과적인 규정 준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시스템은 조직적 측면에서 준법지원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업부서의 준법역량을 강화하며, 준법문화의 전사 확산을 통해 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법지원인 현황

| 성명 | 선임일 | 주요경력 | | 비고 |
|------------------|------------|------|------------------------------------|-------|
| 이상국 | 2022.03.18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임기 3년 |
| | | | 미국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 |
| | |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
| | |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 | 경력 | 前) 삼성그룹 법무팀 수석변호사 | |
| | | | 前) 군인공제회 법무팀 팀장 | |
| 前) 효성중공업 법무담당 임원 | | | | |

■ 2022년 연간 준법지원 활동 세부내역

| 구분 | 주요 활동내역 및 처리 결과 |
|-----------------|---|
|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관리 | 준법통제기준 제정(2022.06.28) |
| 준법 여부 자가 점검 |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 -주요 사업부문별 계약서 검토 -국내외 법률 관련 사항 등 검토 및 자문 |

② 내부회계관리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 평가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K-IFRS)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음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20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③ 공시정보관리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당사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시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부서에서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가 공시담당부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시담당부서에 속한 공시담당자는 해당 정보의 공시 여부,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한 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보고받은 공시서류와 검토내용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도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

당사는 위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i) 및 (ii)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당해 세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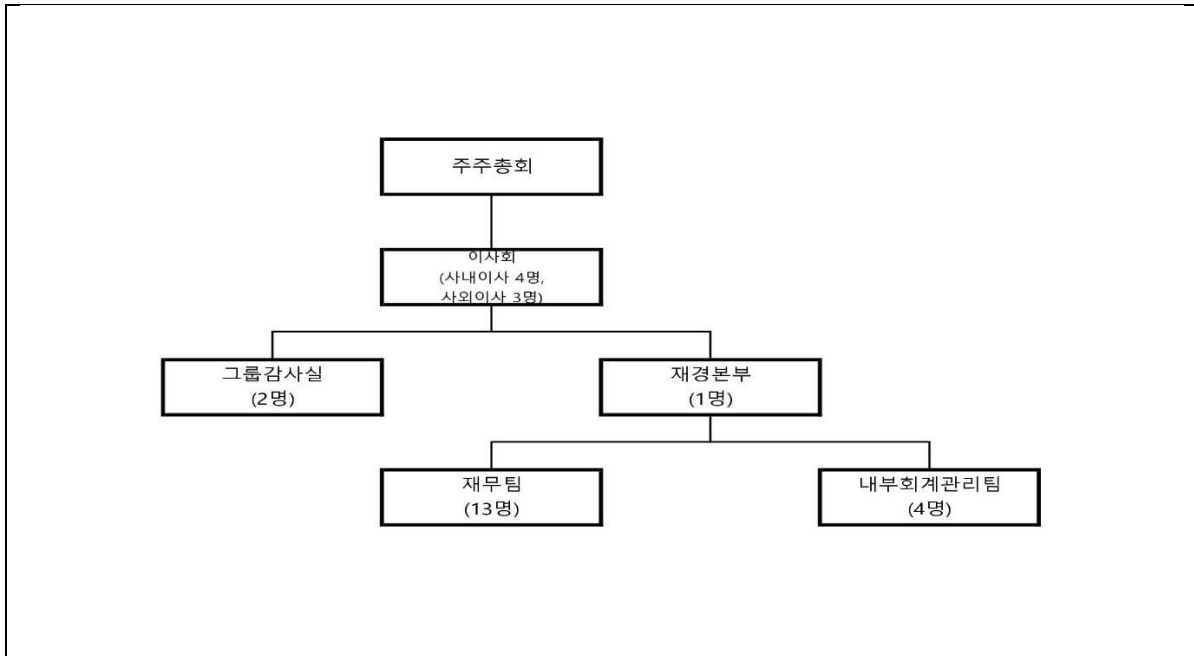
(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인원 구성 포함) 등 관련 조직도(표 4-①-1)

당사 이사회는 정관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최소 인원을 3명을 규정한 것은 상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상법 제383조 제1항)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10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가 이를 초과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 선임)에 의거 이사 총수의 1/4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가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임기는 2년이며, 사외이사 중 이경칠, 허승현 이사는 1회 연임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의장은 최정연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는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연 의장은 세종공업(주) 부회장으로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및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연령, 성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명 | 성별 | 직책 | 선임일 | 임기 만료 | 전문 | 주요 |
|----|----|----|----|-----|-------|----|----|
|----|----|----|----|-----|-------|----|----|

| | | (만 나이) | | | 예정일 | 분야 | 경력 |
|-------|-----|---------|--------|-----------|-----------|------------|--------------------------------|
| 사내 이사 | 박세종 | 남 (84세) | 명예 회장 | 2015.3.25 | 2025.3.29 | 경영 전반 | 연세대경영대학원 현대자동차(주) 근무 |
| 사내 이사 | 박정길 | 남 (51세) | 총괄 부회장 | 2009.3.20 | 2025.3.29 | 경영 전반 | 고려대경영대학원 현대자동차(주) 근무 |
| 사내 이사 | 최정연 | 남 (64세) | 총괄 사장 | 2023.3.29 | 2025.3.29 | 경영 전반 | 건국대학교 현대위아(주) 근무 |
| 사내 이사 | 김익석 | 남 (65세) | 사장 | 2010.3.26 | 2023.3.28 | 경영 (생산 관리) | 울산대학교 세종공업 생산본부 본부장 |
| 사외 이사 | 이경철 | 남 (65세) | 사외 이사 | 2022.3.28 | 2024.3.28 | 세무·회계 | 동래세무서 서장 프로텍광안 대표 |
| 사외 이사 | 허승현 | 남 (50세) | 사외 이사 | 2021.3.29 | 2025.3.29 | 화학 공학 | KAIST 공학박사 울산대학교 화학공학 교수 |
| 사외 이사 | 김수일 | 남 (60세) | 사외 이사 | 2023.3.29 | 2025.3.29 | 세무·회계 | 법무법인 로펌한영 고문 금융감독원 부원장 |

(i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①-3)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iv)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수, 비율, 연임 현황 등을 설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성별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연임 | 업무 |
|------|-----|----|-----------|-----------|----|-------|
| 사외이사 | 이경철 | 남 | 2022.3.28 | 2024.3.28 | 1회 | 세무·회계 |
| 사외이사 | 허승현 | 남 | 2023.3.29 | 2025.3.29 | 1회 | 화학 공학 |
| 사외이사 | 김수일 | 남 | 2023.3.29 | 2025.3.29 | 0회 | 세무·회계 |

총 이사회 인원 7명 중 3명(1/3)으로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경철, 허승현 사외이사는 1회 연임하였고, 김수일 사외이사는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미분리 시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하는지 여부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지 설명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

의 1/4 이상인 3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 선임)에 의거하여 이사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입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객관성, 투명성이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하여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향후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다양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여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여성 이사 선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의 마련 여부 및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

당사는 이사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세종 사내이사는 회사설립부터 현재까지 당사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방향을 총괄 제시하고, 당 회사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기반으로 내부 구성원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정길 사내이사는 주요 국내·외 고객의 미래 전략적 방향성 및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중장기 성장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당사가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연 사내이사는 당사의 대표이사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이전 회사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경영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고객다변화 등 당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익석 사내이사는 당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내부사정에 정통하고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 간 근무하면서 당사의 사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경칠 사외이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승현 사외이사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 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촉매, 비백금계 촉매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당사가 기존 배기계시스템에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수소전기차 부품사업을 추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일 사외이사는 이전에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상장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당사의 회계 및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헌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사업재편에 따라 구조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당사의 재무적 강점을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②-1)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성명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사내이사 | 박세종 | 2015.03.25 | 2023.03.28 | 2023.03.29 | 재선임 | 재직 |
| | 박정길 | 2000.03.23 | 2023.03.28 | 2023.03.29 | 재선임 | 재직 |
| | 김기홍 | 2010.03.26 | 2024.03.28 | 2023.03.28 | 사임 | 퇴직 |
| | 김익석 | 2010.03.26 | 2024.03.28 | 2022.03.28 | 재선임 | 재직 |
| | 최정연 | 2023.03.29 | 2025.03.29 | 2023.03.29 | 신규선임 | 재직 |
| 사외이사 | 이경철 | 2020.03.30 | 2022.03.30 | 2022.03.28 | 재선임 | 재직 |
| | 허승현 | 2021.03.29 | 2023.03.29 | 2023.03.29 | 재선임 | 재직 |
| | 김수일 | 2023.03.29 | 2025.03.29 | 2023.03.29 | 신규선임 | 재직 |

* 변동사유란에는 사임, 해임, 임기만료, 신규선임, 재선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내이사는 경영관리 및 경영기획 등 경영 전반 이외에도 자동차산업 및 해외투자산업에도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또한 다양한 업무 및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문 경영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후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동 위원회의 구성현황 (사외이사 비율 포함)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사내·사외이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후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후보 관련정보를 충분히,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하는지 여부
(표 4-③-1)

당사는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4-③-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 | 주주총회일 | 이사 후보 | | 정보제공내역 | 비고 |
|--------------------------|------------|-------|-----|--|----|
| | | 구분 | 성명 | | |
| 2023.03.10 (주총 18일 전) | 2023.03.28 | 사내 | 박세종 | 1. 출생연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 |
| | | 사내 | 박정길 | | |
| | | 사내 | 최정연 | | |
| | | 사외 | 허승현 | 1. 출생연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5. 겸직여부 | |
| | | 사외 | 김수일 | | |
| 2022.03.10 (주총 18일 전) | 2022.03.28 | 사내 | 김기홍 | 1. 출생연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 |
| | | 사내 | 김익석 | | |
| | | 사외 | 이경철 | 1. 출생연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5. 겸직여부 | |

(ii)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사업보고서 기재와 기타 방법 구분)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하여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상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이사회의 구성, 권한, 후보 추천 방법, 중요 의결사항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진행하면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관련한 내용(성명, 경력, 임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주주총회 2주 간 전까지 진행되는 주주총회 소집공시에는 이사회 활동 내역을 더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기재하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이사 후보 선정과정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진행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회추천위원회'와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진행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임 과정에서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의거하여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회사 내부 조직의 정비 및 소액주주 의견 반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여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을 설명한다.

당사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박세종 | 남 | 명예회장 | 사내이사 | 비상근 | 업무총괄 |
| 서혜숙 | 여 | 회 장 | 미등기 | 상근 | 업무총괄 |
| 박정길 | 남 | 총괄부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 최정연 | 남 | 부 회 장 | 사내이사 | 상근 | 업무총괄 |
| 김익석 | 남 | 사 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 문형규 | 남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미래전략TF 실장 |
| 도기홍 | 남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 본부장 |
| 이동원 | 남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생산본부 본부장 |
| 이상국 | 남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기획본부 본부장 |
| 홍영래 | 남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구매본부 본부장 |
| 옥현근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품질생기본부 본부장 |
| 김철규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태창세종 법인장 (중국연구소 법인장 겸직) |
| 조현덕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세종슬로바키아 법인장 |

| | | | | | |
|-----|---|-------|------|-----|------------------------------|
| 하성용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재경본부 본부장 |
| 노진호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생산실 실장 |
| 김복용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세종체코 법인장 |
| 이상우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글로벌품질실 실장 |
| 김건욱 | 남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NM본부 본부장 |
| 김주리 | 여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법무팀 |
| 김태완 | 남 | 상 무 보 | 미등기 | 상근 | 물류실 실장 |
| 김정민 | 남 | 상 무 보 | 미등기 | 상근 | 미국법인 법인장 |
| 여재홍 | 남 | 상 무 보 | 미등기 | 상근 | 염성세종 법인장 |
| 김현진 | 남 | 상 무 보 | 미등기 | 상근 | 북경세종 법인장 |
| 고성부 | 남 | 상 무 보 | 미등기 | 상근 | 세종이브이 대표이사 (신사업개발실 실장 겸직) |
| 김준영 | 남 | 상 무 보 | 미등기 | 상근 | 신사업영업실 실장 |
| 이경철 | 남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허승현 | 남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김수일 | 남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배정한 | 남 | 감 사 | 감사 | 상근 | 감 사 |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한다. 만일 선임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성명 등은 기재 생략)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중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는 선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및 도입한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관련규정,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증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①-1)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 성명 |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 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 |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 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
|-----|------------------------------|-------------|---|-------------|---|-------------|
|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 이경철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 허승현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 김수일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세종공업(주) | 해당사항 없음 |

(ii)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
이 있는 경우 그 내역(최근 3개 연도)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iii)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 거래
한 내역이 없습니다.

(iv) 기업이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등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여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의 경력 및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통하여 공시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상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0년 0월)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한다.(표5-①-2 활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 성명 | 당사 | | 계열회사 포함시 | |
|-----|-------|--------------|----------|--------------|
| | 재직기간 | 6년 초과 시 그 사유 | 재직기간 | 9년 초과 시 그 사유 |
| 이경철 | 3년2개월 | - | 3년2개월 | - |
| 허승현 | 2년2개월 | - | 2년2개월 | - |
| 김수일 | 0년4개월 | - | 0년4개월 | - |

다.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외이사의 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회사와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한 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 및 공정성을 갖추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사외이사후보 선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통하여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라 타 회사와의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②-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 성명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 | | | 겸직 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재직기간 | 겸직기관 상장여부 |
| 이경칠 | 2020.03.30 | 2024.03.28 | 세무법인 프로텍 광안 대표세무사 | 세종 공업 (주) | 사외이사 | 2020.03.26 ~ 현재 | 상장기업 (유가증권) |
| 허승현 | 2021.03.29 | 2023.03.29 | 울산대 화학과 교수 | 세종 공업 (주) | 사외이사 | 2021.03.29 ~ 현재 | 상장기업 (유가증권) |
| 김수일 | 2023.03.29 | 2025.03.29 | 법무법인 로 평한영 고문 | 세종 공업 (주) | 사외이사 | 2023.03.29 ~ 현재 | 상장기업 (유가증권) |

* 감사위원일 경우 성명 하단에 기재

* 겸직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상 자격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추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사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서면 등으로 제공 현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ii)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당사는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통하여 이사(사외이사 포함)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역(회의 일시, 주요 논의사항, 참석현황 등)

(표 5-③-1)

* 단,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는 제외

당사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표 5-③-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 회차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 / 전체 사외이사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사회 이외에도 사내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에 있어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 인원 및 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마련 및 제공 기록 작성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 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는지,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i)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이사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평가 기법 및 장단점, 결과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ii) 구체적 평가방법(예 :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 및 관련 규정 등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 사외이사에 대한 실제 평가실시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당해 세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 보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의 내용과 해당정책의 수립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여 외에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 별도의 보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회사의 성과와 연동하지 않고,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2022.01.01 ~ 2022.12.31)

(단위 : 천원)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사외이사 (세종공업(주)) | 2 | 48,000 | 24,000 | |
| 사외이사 (덕양산업) | 3 | 101,000 | 34,000 | |
| 사외이사 (한국무브텍스) | 1 | 19,000 | 19,000 | |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성과 연동 여부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에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사외이사의 보수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당사의 사외이사의 보수는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당사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보다 확실한 근거로 보수를 지급하여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규정상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전에 안건 및 일정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 회의>

| | |
|--------------|--|
| 6.1. 종류 | 6.1.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 | 6.1.2. 정기이사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
| | 6.1.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 6.2. 소집권자 | 6.2.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6.2.2.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6.3. 소집절차 | 6.3.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 | |
|--|--|
| | 6.3.2.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결의를 열 수 있다. |
|--|--|

(i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표 7-①-1)

당사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해당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iii)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안건통지일 명시) 등의 현황을 기재(표 7-①-1)

당사의 이사회규정 6.3.1에는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표 7-①-1)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및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2022.01.01 ~ 2022.12.31)

| 회차 | 안건 |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보고 사항 | 2022년도 안전환경관리 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1-10(월) | 2022-01-03(월) | 6/6 |
| | 결의 사항 | 2022년도 안전환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1-10(월) | 2022-01-03(월) | 6/6 |
| 2차 | 보고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보고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2-17(목) | 2022-02-10(목) | 6/6 |
| | 결의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2-17(목) | 2022-02-10(목) | 6/6 |
| 3차 | 보고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08(화) | 2022-03-01(화) | 6/6 |
| | 결의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08(화) | 2022-03-01(화) | 6/6 |
| 4차 | 보고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보고의 건 | 보고 | 정기 | 2022-03-08(화) | 2022-03-01(화) | 6/6 |
| | 결의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2-03-08(화) | 2022-03-01(화) | 6/6 |

| | | | | | | | |
|----|-------|--|----|----|---------------|---------------|-----|
| 5차 | 보고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10(목) | 2022-03-03(목) | 6/6 |
| | 보고 사항 | 이사후보 추천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10(목) | 2022-03-03(목) | 6/6 |
| | 보고 사항 | 전자투표제도 실시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10(목) | 2022-03-03(목) | 6/6 |
| | 결의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10(목) | 2022-03-03(목) | 6/6 |
| | 결의 사항 | 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10(목) | 2022-03-03(목) | 6/6 |
| | 결의 사항 | 전자투표제도 실시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10(목) | 2022-03-03(목) | 6/6 |
| 6차 | 보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11(금) | 2022-03-04(금) | 6/6 |
| | 결의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 별도 재무상태표 및 별도손익계 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11(금) | 2022-03-04(금) | 6/6 |
| | 결의 사항 | 제46기(2021사업년도) 연결 재무상태표 및 연결손익계 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11(금) | 2022-03-04(금) | 6/6 |
| 7차 | 보고 사항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18(금) | 2022-03-11(금) | 6/6 |
| | 보고 사항 | COVID-19에 따른 특정사항 위임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18(금) | 2022-03-11(금) | 6/6 |
| | 결의 사항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18(금) | 2022-03-11(금) | 6/6 |
| | 결의 사항 | COVID-19에 따른 특정사항 위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18(금) | 2022-03-11(금) | 6/6 |
| 8차 | 보고 사항 | (주)세움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 기한연장 연대보증의 건 | 보고 | 정기 | 2022-03-25(금) | 2022-03-18(금) | 6/6 |
| | 결의 사항 | (주)세움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 기한연장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정기 | 2022-03-25(금) | 2022-03-18(금) | 6/6 |
| 9차 | 보고 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28(월) | 2022-03-21(월) | 6/6 |
| | 결의 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28(월) | 2022-03-21(월) | 6/6 |

| | | | | | | | |
|-----|-------|-----------------------------------|----|----|---------------|---------------|-----|
| 10차 | 보고 사항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보고 | 임시 | 2022-04-07(목) | 2022-03-31(목) | 6/6 |
| | 결의 사항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가결 | 임시 | 2022-04-07(목) | 2022-03-31(목) | 6/6 |
| 11차 | 보고 사항 | 이큐브솔루션 추가 출자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5-18(수) | 2022-05-11(수) | 6/6 |
| | 결의 사항 | 이큐브솔루션 추가 출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5-18(수) | 2022-05-11(수) | 6/6 |
| 12차 | 보고 사항 | 한국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보고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5-19(목) | 2022-05-12(목) | 6/6 |
| | 결의 사항 | 한국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보고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5-19(목) | 2022-05-12(목) | 6/6 |
| 13차 | 보고 사항 | 세종알라바마, 세종조지아, 세종멕시코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5-24(화) | 2022-05-17(화) | 6/6 |
| | 결의 사항 | 세종알라바마, 세종조지아, 세종멕시코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5-24(화) | 2022-05-17(화) | 6/6 |
| 14차 | 보고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6-01(수) | 2022-05-25(수) | 6/6 |
| | 결의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6-01(수) | 2022-05-25(수) | 6/6 |
| 15차 | 보고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6-07(화) | 2022-05-31(화) | 6/6 |
| | 결의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6-07(화) | 2022-05-31(화) | 6/6 |
| 16차 | 보고 사항 |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6-10(금) | 2022-06-03(금) | 6/6 |
| | 결의 사항 |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6-10(금) | 2022-06-03(금) | 6/6 |
| 17차 | 보고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6-22(수) | 2022-06-15(수) | 6/6 |
| | 결의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6-22(수) | 2022-06-15(수) | 6/6 |
| 18차 | 보고 사항 |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6-28(화) | 2022-06-21(화) | 6/6 |

| | | | | | | | |
|-----|-------|------------------------------------|----|----|---------------|---------------|-----|
| | 결의 사항 |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6-28(화) | 2022-06-21(화) | 6/6 |
| 19차 | 보고 사항 | 미국 세종조지아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6-28(화) | 2022-06-21(화) | 6/6 |
| | 결의 사항 | 미국 세종조지아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6-28(화) | 2022-06-21(화) | 6/6 |
| 20차 | 보고 사항 | 산업은행 울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연장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7-20(수) | 2022-07-13(수) | 6/6 |
| | 결의 사항 | 산업은행 울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7-20(수) | 2022-07-13(수) | 6/6 |
| 21차 | 보고 사항 | 세움 KB 국민은행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 연대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7-25(월) | 2022-07-18(월) | 6/6 |
| | 결의 사항 | 세움 KB 국민은행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7-25(월) | 2022-07-18(월) | 6/6 |
| 22차 | 보고 사항 |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 및 해지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8-10(수) | 2022-08-03(수) | 6/6 |
| | 결의 사항 |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 및 해지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8-10(수) | 2022-08-03(수) | 6/6 |
| 23차 | 보고 사항 | 중국 북경세종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8-17(수) | 2022-08-10(수) | 6/6 |
| | 결의 사항 | 중국 북경세종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8-17(수) | 2022-08-10(수) | 6/6 |
| 24차 | 보고 사항 | 미국 세종알라바마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9-01(목) | 2022-08-25(목) | 6/6 |
| | 결의 사항 | 미국 세종알라바마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9-01(목) | 2022-08-25(목) | 6/6 |
| 25차 | 보고 사항 | 인도 세종테스크비카스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9-14(목) | 2023-09-07(목) | 6/6 |
| | 결의 | 인도 세종테스크비카스 | 가결 | 임시 | 2023-09- | 2023-09- | 6/6 |

| | | | | | | | |
|-----|-------|-----------------------------|----|----|---------------|---------------|-----|
| | 사항 |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 | 14(목) | 07(목) | |
| 26차 | 보고 사항 | 러시아 세종루스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9-20(수) | 2023-09-13(수) | 6/6 |
| | 결의 사항 | 러시아 세종루스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9-20(수) | 2023-09-13(수) | 6/6 |
| 27차 | 보고 사항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보고 | 임시 | 2023-10-18(수) | 2023-10-11(수) | 6/6 |
| | 결의 사항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가결 | 임시 | 2023-10-18(수) | 2023-10-11(수) | 6/6 |
| 28차 | 보고 사항 | 세종이브이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10-25(수) | 2023-10-18(수) | 6/6 |
| | 결의 사항 | 세종이브이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3-10-25(수) | 2023-10-18(수) | 6/6 |
| 29차 | 보고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11-15(수) | 2023-11-08(수) | 6/6 |
| | 결의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3-11-15(수) | 2023-11-08(수) | 6/6 |
| 30차 | 보고 사항 | 하나은행 울산금융센터 무역금융자금대출 재약정의 건 | 보고 | 임시 | 2023-12-05(화) | 2023-11-28(화) | 6/6 |
| | 결의 사항 | 하나은행 울산금융센터 무역금융자금대출 재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3-12-05(화) | 2023-11-28(화) | 6/6 |

(2023.01.01 ~ 2023.05.31)

| 회차 | 안건 | | 가결 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보고 사항 | 제47기 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2-22(수) | 2023-02-15(수) | 6/6 |
| | 결의 사항 | 제47기 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2-22(수) | 2023-02-15(수) | 6/6 |
| 2차 | 보고 사항 | 미국 세종알라바마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02(목) | 2023-02-23(목) | 6/6 |
| | 결의 | 미국 세종알라바마 현지법인 | 가결 | 임시 | 2023-03- | 2023-02- | 6/6 |

| | | | | | | | |
|----|-------|---|----|----|---------------|---------------|-----|
| | 사항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 | 02(목) | 23(목) | |
| 3차 | 보고 사항 | 제47기 별도재무제표 수정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승인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 보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 결의 사항 | 제47기 별도재무제표 수정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4차 | 보고 사항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 보고 사항 | 이사후보 추천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 보고 사항 | 전자투표제도 실시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 결의 사항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 결의 사항 | 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 결의 사항 | 전자투표제도 실시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10(금) | 2023-03-03(금) | 6/6 |
| 5차 | 보고 사항 | 제47기(2022사업년도) 별도재무상태표 및 별도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17(금) | 2023-03-10(금) | 6/6 |
| | 결의 사항 | 제47기(2022사업년도) 별도재무상태표 및 별도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17(금) | 2023-03-10(금) | 6/6 |
| 6차 | 보고 사항 | 모비스스앤밸류체인 설비구매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3-17(금) | 2023-03-10(금) | 6/6 |
| | 결의 사항 | 모비스스앤밸류체인 설비구매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17(금) | 2023-03-10(금) | 6/6 |
| 7차 | 보고 사항 | 현대커머셜 동반성장펀드 50억 대출의 건 | 보고 | 정기 | 2023-03-21(화) | 2023-03-14(화) | 6/6 |
| | 결의 사항 | 현대커머셜 동반성장펀드 50억 대출의 건 | 가결 | 정기 | 2023-03-21(화) | 2023-03-14(화) | 6/6 |
| 8차 | 보고 | 안전환경관리 계획 보고 및 승 | 보고 | 임시 | 2023-03- | 2023-03- | 6/6 |

| | | | | | | | |
|-----|-------|-----------------------------------|----|----|---------------|---------------|-----|
| | 사항 | 인의 건 | | | 24(금) | 17(금) | |
| | 결의 사항 | 안전환경관리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24(금) | 2023-03-17(금) | 6/6 |
| 9차 | 보고 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보고 | 임시 | 2022-03-28(월) | 2022-03-21(월) | 7/7 |
| | 결의 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2-03-28(월) | 2022-03-21(월) | 7/7 |
| 10차 | 보고 사항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보고 | 임시 | 2023-04-18(화) | 2023-04-11(화) | 7/7 |
| | 결의 사항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가결 | 임시 | 2023-04-18(화) | 2023-04-11(화) | 7/7 |
| 11차 | 보고 사항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4-19(수) | 2023-04-12(수) | 7/7 |
| | 결의 사항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4-19(수) | 2023-04-12(수) | 7/7 |
| 12차 | 보고 사항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4-25(화) | 2023-04-18(화) | 7/7 |
| | 결의 사항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4-25(화) | 2023-04-18(화) | 7/7 |
| 13차 | 보고 사항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보고 | 임시 | 2023-05-16(화) | 2023-05-09(화) | 7/7 |
| | 결의 사항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가결 | 임시 | 2023-05-16(화) | 2023-05-09(화) | 7/7 |
| 14차 | 보고 사항 | 세종알라바마, 세종조지아, 세종멕시코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5-24(수) | 2023-05-17(수) | 7/7 |
| | 결의 사항 | 세종알라바마, 세종조지아, 세종멕시코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5-24(수) | 2023-05-17(수) | 7/7 |
| 15차 | 보고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보고 | 임시 | 2023-05-26(금) | 2023-05-19(금) | 7/7 |
| | 결의 사항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5-26(금) | 2023-05-19(금) | 7/7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의 정기이사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사회 보고사항 및 결의사항과 관련한 업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기이사의 정례화, 이사회 구성원들의 일정 조율 등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업무가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작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해당 내부기준 및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추후에는 세부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표 7-②-1 활용) 및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표 7-②-2 활용)을 기재한다.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을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표 7-②-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2.01.01 ~ 2023.05.31)까지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개최 시에 해당 이사회에 성실히 출석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찬반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표 7-②-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2022년>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비고 |
|----|----------|--------------|--------------|--------------|--------------|--------------|--------------|--------------|--------------|--------------|--------------|----|
| | 개최 일자 | 22.01 .10 | 22.02 .25 | 22.03 .04 | 22.03 .08 | 22.03 .10 | 22.03 .11 | 22.03 .18 | 22.03 .25 | 22.03 .28 | 22.04 .07 | |
| 사내 | 박세중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박정길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기홍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익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사외 | 이경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 | |
|--|-----|----|----|----|----|----|----|----|----|----|----|--|
| | 허승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구분 | 회차 | 11차 | 12차 | 13차 | 14차 | 15차 | 16차 | 17차 | 18차 | 19차 | 20차 | 비고 |
|----|----------|--------------|--------------|--------------|--------------|--------------|--------------|--------------|--------------|--------------|--------------|----|
| | 개최 일자 | 22.05 .18 | 22.05 .19 | 22.05 .24 | 22.06 .01 | 22.06 .07 | 22.06 .10 | 22.06 .22 | 22.06 .28 | 22.07 .05 | 22.07 .20 | |
| 사내 | 박세종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박정길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기홍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익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사외 | 이경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허승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구분 | 회차 | 21차 | 22차 | 23차 | 24차 | 25차 | 26차 | 27차 | 28차 | 29차 | 30차 | 비고 |
|----|----------|--------------|--------------|--------------|--------------|--------------|--------------|--------------|--------------|--------------|--------------|----|
| | 개최 일자 | 22.07 .25 | 22.08 .10 | 22.08 .17 | 22.09 .01 | 22.09 .14 | 22.09 .20 | 22.10 .18 | 22.10 .25 | 22.11 .15 | 22.12 .05 | |
| 사내 | 박세종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박정길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기홍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익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사외 | 이경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허승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023년>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비고 |
|----|----------|--------------|--------------|--------------|--------------|--------------|--------------|--------------|--------------|----|
| | 개최 일자 | 23. 02.22 | 23 .03.02 | 23. 03.10 | 23. 03.10 | 23. 03.17 | 23. 03.17 | 23. 03.21 | 23. 03.24 | |
| 사내 | 박세종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박정길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기홍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익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사외 | 이경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허승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구분 | 회차 | 9차 | 10차 | 11차 | 12차 | 13차 | 14차 | 15차 | 비고 |
|----|----------|--------------|--------------|--------------|--------------|--------------|--------------|--------------|----|
| | 개최 일자 | 23. 03.28 | 23. 04.18 | 23. 04.19 | 23. 04.25 | 23. 05.16 | 23. 05.24 | 23. 05.26 | |
| 사내 | 박세종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박정길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익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최정연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
| 사외 | 이경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허승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김수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ii)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표 7-②-2)

(표 7-②-2)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성명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2022 | 2021 | 2020 | | 2022 | 2021 | 2020 | |
| 박세종 | 사내 | 1976.06.10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박정길 | 사내 | 2000.03.23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김기홍 | 사내 | 2010.03.28 ~ 2023.03.28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김익석 | 사내 | 2010.03.26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경칠 | 사외 | 2020.03.30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허승현 | 사외 | 2021.03.29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iii)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는지 여부

* 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설명

당사는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이 아닌 이사회 의사록에 포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세부원칙 4-④에서 기재한 경우 생략 가능)을 설명한다.

* 상기 열거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이후, 추가로 그 밖의 위원회 설치사항을 기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감사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해당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는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i)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임면 등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규정 10.1부터 10.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당사가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규정 10.1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목적, 10.2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항, 10.3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인원구성, 10.4에는 이사회 위원회의 대표자 선정, 10.5에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입니다.

<정관 제39조의2>

| | |
|-----|--|
| 제1항 |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 제2항 |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제3항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제37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제38조), 이사회회의 의사록(제39조) |

<이사회 규정>

| | | |
|------|------|---|
| 설치목적 | 10.1 |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위임 | 10.2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사항, 대표자 선·해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 구성 | 10.3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
| 대표자 | 10.4 |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세부운영 | 10.5 |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당사는 상근감사가 있어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을 설명한다.(표 8-②-1)

* 감사위원회의 경우 세부원칙 9-②에서 기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4.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관련 경력·자격 등을 구체적

으로 기재) (표 9-①-1)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현황은 다음(표 9-①-1)과 같습니다. 후술할 (ii)에서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하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직무관리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당사의 감사인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에 따라 상장회사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5년 이상 재무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및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일련번호 : 070059) 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여 감사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감사인은 상근감사로서 상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 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 구성 | |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성명 | | |
| 감사 | 감사 | 배정한 | 前) 우리은행 부산경남 기업영업본부 본부장(2009 ~ 2012) 前) 흥국저축은행 은행장(2013 ~ 2014) 現) 세종공업 상근감사(2014 ~ 현재) | |

(ii)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 요건, 상근감사의 겸직 허용 여부 등)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그룹감사실”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실은 타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인사평가와 관련해서는 타 부서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직무수행 및 감사원의 구성 시 근무기간 및 인사사고 등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및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를 선임하며, 겸직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령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 | |
|--------------|---|
| 감사직무 관리규정 | <p>2.1.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p> <p>6.1.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하여야 한다.</p> <p>6.2.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p> <p>9.1.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에게 전속되는 감사팀을 둔다.</p> <p>9.2. 감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감사원’이라 한다)은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본사 타부서의 인력을 차출하여 일시적으로 감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9.3. 감사원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11.4. 대표이사는 감사원의 보직 및 전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를 한다.</p> <p>11.5. 감사원은 3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 시에만 예외로 한다.</p> <p>11.6. 감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할 수 있다.</p> <p>11.7. 감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

②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 | |
|--------------|---|
| 감사직무 관리규정 | <p>8.1. 감사는 외부감사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원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0.1. 감사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10%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11.2. 감사원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IT관련 기술전문 및 기타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p> |
|--------------|---|

③ 후보자 선정 요건 및 상근감사의 겸직 허용 여부

| | |
|--------------------------|--|
| 상법 제542조의10 (상근감사) | <p>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p>제1호.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p> <p>제2호.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p> <p>제3호.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
| 정관 제41조의2 (감사의 수와 선임) | <p>제1항.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p>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관련하여 '감사직무관리규정' 및 '내부감사 및 감사업무요령'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관리규정'에서는 해당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부터 감사권한, 감사부설기구 및 감사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및 감사업무요령'에서는 감사직무관리규정에서 명시된 감사업무 및 보고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공시대상기간 중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교육계획 이행여부 등)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단순한 서면, 책자 등 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또는 화상교육의 경우만 인정

당사는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기 중 내부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제공한 바는 없습니다. 추후에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iii)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당사의 감사직무관리규정에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각 부서의 장이 담당이사, 대표이사,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감사가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원의 활동과도 연계되어 외부감사원이 부정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당사의 감사직무관리규정에는 감사 진행 시 대표이사, 이사 및 경영진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사는 감사직무 수행 시 피 감사팀장에게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 | |
|----------------------|--|--|
| 감사 직무 관리 규정 | 부정행위 조사 관련 | 8.4. 감사는 외부감사원이 감사 중에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회계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 | | 8.5.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27.1. 각 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이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
| 지원 관련 | 9.4. 대표이사, 이사와 경영진은 감사가 감사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 | 14.1.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 감사팀장에게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 감사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iv)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

① 조직

| 조직명 | 인원 | 직급 | 전문성 |
|-------|----|----|--------------|
| 그룹감사실 | 1 | 과장 | 근속연수(12년1개월) |

②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은 가. 항목의 (ii) 문항에 작성한 내용과 같습니다.

③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 감사 - 대표이사 - 주주총회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발견되는

위반사항은 각 부서 팀장 - 담당이사 및 감사 - 대표이사 - 주주총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v)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접근성 검토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접근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접근한 정보에 대해서 해당 이사 및 직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 | |
|----------|---|
| 감사직무관리규정 | 4.2.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
| | 15.1. 이사는 회사재산의 보전과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등의 우려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 | 17.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 | 20.1.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
| | 20.3. 감사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다.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i) 보수정책 운영 현황,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등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보수내용이나 보수총액 등이 다른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을 의미함

① 보수정책 운영 현황

당사의 감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단위 : 천원)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보수비율 |
|------|-----|---------|------|
| 사외이사 | 3 | 48,000 | 21% |
| 감사 | 1 | 182,873 | 79% |

라.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관련 계획 포함)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에 의거하여 상근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도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해당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감사직무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에 대해서도 감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산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 감사인 선임 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①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에 의거하여 상근감사제도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를 포함한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 및 이사회 의사록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1회 | 2022.01.10(월) | 2022년도 안전환경관리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2회 | 2022.02.25(금) | 제46기 별도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의 건 | 가결 | - |
| 3회 | 2022.03.04(금)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4회 | 2022.03.08(화) | 제46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5회 | 2022.03.10(목)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6회 | 2022.03.11(금) | 제46기 재무제표 확정 및 내부회계감사결과 보고의 건 | 가결 | - |
| 7회 | 2022.03.18(금) | 준법지원인 선임 및 COVID-19에 따른 특정사항 위임의 건 | 가결 | - |
| 8회 | 2022.03.25(금) | (주)세움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기한 연장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 9회 | 2022.03.28(월)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가결 | - |
| 10회 | 2022.03.28(월)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11회 | 2022.04.07(목)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가결 | - |
| 12회 | 2022.05.18(수) | 이큐브솔루션 추가 출자의 건 | 가결 | - |

| | | | | |
|-----|---------------|------------------------------------|----|---|
| 13회 | 2022.05.19(목) | 한국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대출의 건 | 가결 | - |
| 14회 | 2022.05.24(화) | 세종알라바마, 세종조지아, 세종멕시코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15회 | 2022.06.01(수)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16회 | 2022.06.07(화)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17회 | 2022.06.10(금) |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의 건 | 가결 | - |
| 18회 | 2022.06.22(수)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19회 | 2022.06.28(화) |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 가결 | - |
| 20회 | 2022.07.05(화) | 미국 세종조지아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 21회 | 2022.07.20(수) | 산업은행 울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 |
| 22회 | 2022.07.25(월) | 세움 KB 국민은행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 23회 | 2022.08.10(수) |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 및 해지의 건 | 가결 | - |
| 24회 | 2022.08.17(수) | 중국 북경세종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25회 | 2022.09.01(목) | 미국 세종알라바마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 26회 | 2022.09.14(수) | 인도 세종테스크비카스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27회 | 2022.09.20(화) | 러시아 세종루스 현지법인 차입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28회 | 2022.10.18(화)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가결 | - |
| 29회 | 2022.10.25(화) | 세종이브이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 30회 | 2022.11.15(화)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2023년>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1회 | 2023.02.22(수) | 제47기 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2회 | 2023.03.02(목) | 미국 세종알라바마 현지법인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 3회 | 2023.03.10(금) | 제47기 별도재무제표 수정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4회 | 2023.03.10(금)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5회 | 2023.03.17(금) | 제47기 별도, 연결재무제표 확정 | 가결 | - |
| 6회 | 2023.03.17(금) | 모비어스앤밸류체인 설비구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 7회 | 2023.03.21(화) | 현대커머셜 동반성장펀드 50억 대출의 건 | 가결 | - |
| 8회 | 2023.03.24(금) | 안전환경관리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
|-----|---------------|--------------------------------------|----|---|
| 9회 | 2023.03.28(화)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10회 | 2023.04.18(화)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가결 | - |
| 11회 | 2023.04.19(수)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가결 | - |
| 12회 | 2023.04.25(화) |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 | 가결 | - |
| 13회 | 2023.05.16(화)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 가결 | - |
| 14회 | 2023.05.24(수) | 세종알라바마, 세종조지아, 세종멕시코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15회 | 2023.05.26(금) | 세종루스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②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지난 6년은 자유선임을 진행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업연도 | 회계법인 | 선임방법 |
|------------------------------|--------|-----------------|
| 제47기(2022년) ~ 제49기(2024년) | 동현회계법인 |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선임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검토(감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47기), 2021년(46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결과 적정하게 운영되어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제출일자 | 제목 |
|------------|----------------|
| 2023.03.2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
| 2022.03.2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

(ii)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표 9-②-1)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9-②-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석 내역 및 출석률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 가결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보고사항 | - | - |
| | | | 결의사항 | - | - |

②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비고 |
|----|------|----|----|----|----|----|----|
| | 개최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성명 | 출석률(%)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2021 | 2020 | 2019 |
| - | - | - | - | - | - |

(iii)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 | |
|--|--|
| ① 감사절차 | |
| 당사의 감사업무는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계획서를 전부서 및 자회사에 통보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계획 통보 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 |
| ②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 |
| 당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해야 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③ 주주총회 보고절차 | |
|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서류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감사직무관리규정 | |
| 감사절차 | 13.1 감사는 감사팀 및 외부감사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13.3 수립된 감사계획은 전부서 및 자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실시 전 최소한 2주 전에 해당 부서 혹은 자회사에 세부 실행계획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 | 14.1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 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 감사록 | 24.1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 24.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주주총회 보고절차 | 26.1.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 | 26.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이사회 회의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사업보고서, 주주총회로, 외부감사인 선임의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절차 및 감사록 작성, 주주총회 보고절차는 감사직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절차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채권자 대표 임직원 1명, 기관투자자 대표 임직원 1명으로 구성되며, 지원한 회계법인 자료를 검토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합니다.

(ii)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현황(위원 명단, 위원들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한 평가결과 등)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에 따라 선임하였습니다.

<2021년>

| 선임위원 | 인원(수) | 세부사항 |
|----------|-------|----------------|
| 내부감사 | 1명 | 배정한 감사 |
| 사외이사 | 2명 | 홍성태 이사, 이경철 이사 |
| 채권자 대표 | 1명 | 우리은행 |
| 기관투자자 대표 | 1명 | KB국민은행 |

<2022년>

해당 연도는 지정감사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지정감사제도 실시 이유에 관해서는 (v)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iii)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평가, 감사계획, 감사시간 등

*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서면보고 제외)

당사는 기존 외부감사인과의 계약만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3일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 및 확정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보수, 감사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0일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는 최종 평가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은 2021사업연도만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년도부터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동현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지정선임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회계법인과의 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23년 3월말 기준)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 실제수행내역 | |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47기 | 동현회계법인 | 분반기, 중간, 기말재고실사, 결산연 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 690 | 6,511 | 690 | 6,303 |
| 제46기 | 안진회계법인 | 분반기, 중간, 기말재고실사, 결산연 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 550 | 5,200 | 550 | 6,520 |
| 제45기 | 안진회계법인 | 분반기, 중간, 기말재고실사, 결산연 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 530 | 5,200 | 530 | 6,403 |

(iv)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여부 및 그 내용(외부감사 담당 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등)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이사의 참여 하에 금융감독원의 중점점검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v)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선정 사유 및 관련 비용 지급 내역

(감사 비용 및 비감사 자문용역 금액)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이 선임된 경우 지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2016년 ~ 2021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였기 때문에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구분 | 사업연도 | 회계법인 | 선임방법 |
|------------|-------------|--------|------|
| 직전 6개 사업연도 | 제41기(2016년) | 안진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 | |
|------------|------------------------------|--------|-----------------|
| | 제42기(2017년) | 삼덕회계법인 | |
| | 제43기(2018년) | 안진회계법인 | |
| | 제44기(2019년) | 안진회계법인 | |
| | 제45기(2020년) | 안진회계법인 | |
| | 제46기(2021년) | 안진회계법인 | |
| 이후 3개 사업연도 | 제47기(2022년) ~ 제49기(2024년) | 동현회계법인 |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선임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외부감사인 선임 시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한 후, 감사보수, 감사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당사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i)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서면보고 제외)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를 다음 표(*외부감사인과의 논의내용)에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협의는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해서 진행되었지만, 분기별 1회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ii) 주요 협의 내용(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및 내부감사업무의 반영 절차(필요시 관련 실적 기재)

① 주요 협의 내용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2022년도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중심으로 한 감사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의 4가지 분야입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현황에 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②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후 내부감사업무 진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업무는 내부통제시스템 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데, 해당 체크리스트에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논의내용(2022.01.01 ~ 2023.05.31)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2023년 03월 16일 |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서면회의 | 기말감사 결과 논의 |
| 2022년 08월 24일 | 회사측 : 감사, 감사실장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감사팀 구성 핵심감사사항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보고 |
| 2022년 03월 08일 | 감사 1인, 업무수행이사 나기영 | 대면회의 | 외부감사 결과 보고 |

(iii)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① 외부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 통보 절차

당사에서는 외부감사인은 감사 이전에 감사계획을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수시로 감사상황에 대하여 의논하며,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감사직무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후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표시, 조언,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
|-------------|--|
| 감사의 의견표명 | 5.1.1. (의견표시)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 | 5.1.2. (조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장래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이사에게 조언한다. |
| | 5.1.3. (권고) 감사는 회사의 업무에 적법성을 결하거나 결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이사에게 조언한다. |

| | |
|--------------|--|
| 외부감사원의 연계 | 8.1. 감사는 외부감사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원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8.2. 감사는 외부감사원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감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 | 8.3. 감사는 외부감사원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 | 8.4. 감사는 외부감사원이 감사 중에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회계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iv)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명 및 제출 시기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의거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법령을 위반한 내역이 없습니다.

| 제출일 | 주주총회일 | 기간 차이 | 제출서류 | 외부감사인 |
|------------|------------|-----------|--------------|--------|
| 2023.02.22 | 2023.03.28 | 34일(4주 전) | 감사전 재무제표(연결) | 동현회계법인 |
| 2023.02.02 | 2023.03.28 | 54일(6주 전) | 감사전 재무제표(별도) | 동현회계법인 |
| 2022.02.04 | 2022.03.28 | 31일(4주 전) | 감사전 재무제표(연결) | 안진회계법인 |
| 2022.02.25 | 2022.03.28 | 52일(6주 전) | 감사전 재무제표(별도) | 안진회계법인 |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회의 빈도가 분기별 1회 미만인 경우 등)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의는 공시대상제출기간(2022.01.01~2023.05.31)동안 3회로 분기별 1회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회의 중 대면으로 진행된 회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추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를 대면 및 화상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여건을 개선하여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주요 사항(필요시)

- **핵심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해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한다.**

당사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역이 없습니다.

별첨. 관련규정

| | |
|---|------------|
| 1 | 정관 |
| 2 | 이사회 운영규정 |
| 3 | 윤리강령 |
| 4 | 내부회계제도관리규정 |
| 5 | 공시정보관리규정 |
| 6 | 감사직무관리규정 |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구분 | 핵심지표 | 준수여부 (당기) | |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설명 | 준수여부 (직전) | | 비고 |
|-----|--------------------------------------|--------------|---|---|--------------|---|-------------|
| | | O | X | | O | X | |
| 주주 |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X | '23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5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X | 세부원칙 1-① |
| | 2. 전자투표 실시* | O | | '23년 정기주주총회시 전자투표제도 실시 (삼성증권) | O | | 세부원칙 1-② |
| | 3.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 '23년 주주총회 집중일(3/24, 30, 31)을 피해 개최(3/28) | O | | 세부원칙 1-② |
| | 4.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 1. 정관에 배당과 관련한 정책이 있음 2.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로 통지함(3/20) 3. 배당실시 계획은 주주에게 통지함(3/10) | O | | 세부원칙 1-④ |
| 이사회 |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 X |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X | 세부원칙 3-② |
| | 6.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 X | 1. 리스크관리정책 : 마련하고 있지 않음 2. 준법경영 :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이행함(윤리강령) 3. 내부회계관리 :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 4. 공시정보관리 :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 | | X | 세부원칙 3-③ |
| |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 X | 상근 경영진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음 | | X | 세부원칙 4-① |

| | | | | | | | |
|----------|--|---|---|--|---|---|--------------|
| | 8. 집중투표제 채택 | | X |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음(제30조) | | X | 세부원칙 4-③ |
| | 9.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 X | 관계법령(상법 등)에 의해서만 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음 | | X | 세부원칙 4-④ |
| | 10.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O | | 당사 사외이사 재직기간(0년4개월 ~ 3년2개월) | O | | 세부원칙 5-① |
| 감사 기구 | 11.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X | 대면 교육 및 화상 강의를 통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음 | | X | 세부원칙 9-① |
| |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감사실)이 설치됨 | O | | 세부원칙 9-① |
| |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전문가 존재 여부 | O | | 당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배정한 감사(상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 O | | 세부원칙 9-① |
| |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 X | 2022년 3/8, 8/24 2023년 3/16에 회의를 개최(분기별 1회 미만) | | X | 세부원칙 10-② |
| |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O | | 당사의 감사직무관리규정에 따라 회사 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한 정보에 대해서 해당 이사 및 그 직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O | | 세부원칙 9-① |

*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2023.03.28(제47기)

** 공시대상 기간 내 : 2022.01.01 ~ 2023.05.31